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226-10호(심의일: 2025.06.02)

(유효기간: 2025.06.09 ~ 2027.05.31)

「일반정기예금」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일반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예치식 예금

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				
가입자격	■ 제한 없음				
상품유형	■ 정기예금				
가입기간	• 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일 단위/월 단위)				
가입금액	■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한도 없음(원 단위. 추가입금 불가)				
거래방법	■ 신규: 영업점, 인터넷뱅킹 ■ 해지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KB스타뱅킹				
계약해지방법	 ● 영업점, 인터넷뱅킹, KB스타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(단,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함) ※ 중도해지 / 만기후해지의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해지 가능 ● 만기 자동해지 가능 ※ 만기 자동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 가능 ● 분할해지 불가 ●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(일요일 포함)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해당일수만큼 약정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				
만기이율 (세금공제 전, 2025.06.09 기준)	계약기간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	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	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
	적용이율	연 1.40%	연 1.75%	연 2.00%	연 2.25%
	계약기간	24 개월 이상 약기간 36 개월 미만 36 개월 초과 60 개월		마 60 개월	
	적용이율	연 2.10%	연 2.20%	36개월까지 : 36개월 약정이율	36개월 초과 : 36개월 경과시점의 36개월 약정이율

이자지급시기

-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- 월이자지급식 :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

이자계산방법 (산출근거) [세전] 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(원미만 절사) [이자계산 산식] [일 단위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일수 ÷ 365 [월 단위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÷ 12



-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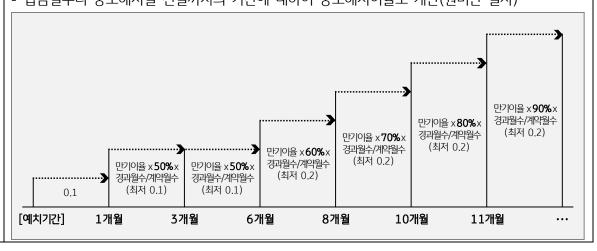
(3년 초과 후 중도해지 시 만기이율을 예치기간별로 구분 적용)

(단위: 연 %)

예치기간	이율
1개월미만	0.1
1개월이상~3개월미만	만기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3개월이상~6개월미만	만기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6개월이상~8개월미만	만기이율 X 6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8개월이상~10개월미만	만기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0개월이상~11개월미만	만기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1개월이상	만기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
중도해지이율 (산출근거) (세금공제 전, 2025.06.09 기준)

- 1. 만기이율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(우대이율 제외)
- 2. 경과월수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
- 3. 계약월수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 단,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
- 4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-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로 계산(원미만 절사)



	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에 고시한 경과기간별					
	만기후이율 적용	(단위: 연 %)				
만기후이율	경과 ^{주)} 기간	이율				
(산출근거)	만기후 1개월이내	만기이율 X 50%				
(세금공제 전,	- 만기후 1개월초과~3개월이내	만기이율 X 30%				
2025.06.09	만기후 3개월초과	0.1				
기준)	주) 경과: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					
	1. 만기이율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(우대이율 제외)					
	2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 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					
세제 관련	- 미피세공업시국으로 기업기능 ※ 단,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					
세세 펀턴 	※ 단, 판단 세립 개성 시 세뮬이 단성되기다 제품이 무파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	
THALL						
재예치	■ 불가					
양도 및	■ 양도 가능					
담보제공	■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		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압류^{주1}, 가압류^{주2}, 질권^{주3)}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					
	주 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주 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주 3) 질권설정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					
	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					
휴면예금 및 출연	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 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 ^{주)}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				
	주) 출연: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					
	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/해지 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					

해 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■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^{주1)}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 ^{주2)}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			
주 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 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 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 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 조) 주 2) 해지요구서: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			
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			
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
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5천만원 -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체결한 경우에는 법 이내의 범위)에 해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위약금 등 계약의 하 주 1)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에 대해 부 또는 왜곡하여 설명 불공정영업행위의 등 주 2) 해지요구서: 금융성 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금융소비자의 권리 업무 위탁에 관한 - 은행은 법령, 제 3 자		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19 조제 1 항,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, 제 3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(P)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